

# 답 변 서

사 건 2005구합 33142호      재임용거부처분취소  
 원 고 김 명 호  
 피 고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

위 당사자간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## 답 변 취 지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 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답 변 사 실



2005. 4. 4. 청구취지 기재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.



2. 그러나, 원고는 1996. 3. 13. 위와 동일한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1996. 4. 23. 각하결정을 받았고,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.

3. 그렇다면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, 그 이후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, 위 결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달리 규정한다해서 위 확정 효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.

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,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여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.

2005. 12.

피고 소송대리인 **일신법무법인**

담당변호사 이 재 원



서울행정법원 제 1행정부

귀 중

서울 동작구 상도동  
415 상도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

원고1

김명호



2096818-945329

(행정과 제1행정부)

156-030

---

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

2005구합 33142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.

담당재판부 : 제1행정부

법원주사

조 경 훈

전 화 : 3479-3116,3117

---

---